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84

발의연월일: 2021. 11. 29.

발 의 자 : 홍석준 • 이철규 • 김정재

지성호・추경호・서일준

김석기 • 이헌승 • 정운천

주호영 · 조명희 · 김태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도움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스스로를 성범죄로부터 정상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경 우가 있음. 특히, 의료기관에 입원한 아동·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분 리되어 있는 환경에 종종 노출되어 성범죄 피해의 위험도가 높음.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1

2호 후단 삭제).

법률 제 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		
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		
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 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 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 1. ~ 11. (생략)
-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 | 12. -----관. 이 경우 「의료법」 제2 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 <u>다.</u>
- 13. ~ 22. (생 략)
- ② ~ ⑧ (생 략)

•	
•	
-	

- 1. ~ 11. (현행과 같음)
- -- <u><후단 삭제></u>
 - 13. ~ 22. (현행과 같음)
 - ② ~ ⑧ (현행과 같음)